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김대일 의원 외 19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대일 의원

나. 제안이유

○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목재산업 인력육성, 목재문화 교육 등 목재 이용의 전반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재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목재건축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가. 제정의 필요성

- 제재목 등 19개 목재제품¹⁾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²⁾에 따르면 국내 목재 이용량은 30,800,395 m³으로 원목(21.3%), 수입 목재제품(73.8%), 원목 외 원자재(4.9%)임.

※ 원목 중 국산원목은 3,5401,258 m³, 수입원목은 3,034,320 m³

1) 제재목,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목재칩, 목재펠릿,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목초액), 톱밥 및 목분, 장작(원목생산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등), 표고버섯 재배자목, 펄프

2) 산림청, 「2022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 우리나라 목재산업 규모는 매출액 8조 2,730억원, 종사자수는 12,797명(국내생산 7,539명, 수입유통 5,258명)임.
 - 경상북도는 2022년 국내 생산 원목의 15.8%인 559,545m³를 생산하며, 소비는 경상북도 233,224m³(41.6%), 인천광역시 133,169m³(23.7%), 전북특별자치도 99,385m³(17.7%) 순으로 소비되고 있음.
- ※ 2022년 경상북도에서 소비된 원목 277,070m³의 84.1%인 233,224m³를 도내에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44개 중 종사자가 5인 미만 업체 45.0% (355개), 5인~9인 업체 29.0%(216개), 10인~19인 업체 16.9%(126개)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6%(726개)가 소기업 이하임.
 - 국산 목재 자급률은 2021년 기준 15.9%로 10년이 넘도록 15~16% 수준이며, 목재 수입을 위해 매년 약 6조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국내 목재산업의 위축이 우려됨.

<2017~2021년간 국내 목재수급량 및 자급률 현황>

(단위 : 천 m³,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재수급량	29,754	30,056	27,666	27,925	28,403
목재자급률	16.4	15.2	16.6	15.9	15.9

* 출처 : 산림청

-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 확대, 목조건축 활성화, 목재문화 진흥, 지역목재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역목재산업 발전을 견인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항	조제목	조항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우선구매
제2조	정의	제7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포상
제5조	사업	부칙	시행일

다.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제정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함.

- 제정안 제2조는 제정안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목재”를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으로 정하고 다른 용어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법에서는 “목재”와 “목재제품”, “지역 간벌재”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목재”와 “목재제품”이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목재”를 “지역 목재”와 “지역 목재제품”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이 우선구매 대상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은 목재제품 생산장 소재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60% 이상 사용한 목재제품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은 본 제정안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지역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의 사용 비율을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제3조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책무를 부여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목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제정안 제5조는 지역목재의 이용을 위해 경상북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경상북도 내 목재제품의 판로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조치로 판단됨.
- 제정안 제6조는 도지사가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 또는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역 내 가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 및 판로지원”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4년 7월 24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는 폐지되고, “구매 및 판로지원 등”은 유지될 예정임.

법 시행 후에는 “구매 및 판로지원 등”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7조에서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규정한 것은 건축물이 전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6%, 이산화탄소 배출의 38%를 차지고 있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목조건축의 경우 36 m^2 건축물이 9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탄소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은 2017년부터 목재를 건축자재로 건축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재 우선 사용 의무화 등 전 세계적으로 목재 사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어 시의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됨.

- 제정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목재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라. 종합의견

- 목조건축의 경우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밀워키의 25층 높이의 어센트), 노르웨이(오슬로의 18층 높이의 미에스트르네) 등은 대규모, 고층의 목조건축물을 앞다퉈 건설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7층 규모의 목조건축물인 산림 복지종합교육센터를 2024년 준공할 예정임.
- 또한, 목재는 별집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어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으며, 콘크리트 대비 인장 성능은 255배 높고, 피톤치드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편백나무숲 또는 관련 제품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목재제품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에게 진정·각성효과 등 다양한 유익한 효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제정안이 제정되면 지역목재의 이용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 목조건축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효과가 기대됨.
- 아울러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